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·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 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2조제2항 제1호 | 200            | 300   | 500      |
| 나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2조제1항     | 1,000          | 2,000 | 3,000    |
| 다. 법 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2조제2항 제2호 | 150            | 200   | 300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라.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확 습병행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2조제2항 제3호 | 150 | 200 | 300 |
| 마.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현장조사 등의 지도·점검을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| 법 제42조제2항 제4호 | 300 | 400 | 500 |